

자조와 협동으로 호혜의 경계를 실현하는,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2022년 제9차 정기총회 자료집

일시 : 2022년 3월16일(수) 오후3시

장소 :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세미나실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http://www.coop4a.or.kr>

자조와 협동으로 호혜의 경계를 실현하는,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순 서

회의식 순

15:00~

개회선언 및 성원보고
서기임명
의사록 서명 날인인 선임
의사일정 확정
안건토의

전차회의록 승인
제1호 의안 2021년 사업 및 결산 감사보고
제2호 의안 2021년 사업 및 결산보고 심의 건
제3호 의안 정관 개정의 건
제4호 의안 임원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건
제6호 의안 기타

전차회의록 승인

2021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제8차 정기총회 회의록

2021년 3월 11일(목). 서면(화상)총회

순 서

회 의 식 순

14:00~

- 전차회의록 확인
- 제1호 의안 2020년 사업 및 결산 감사 보고
- 제2호 의안 2020년 사업 및 결산보고 심의 건
- 제3호 의안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건
- 제4호 의안 임원 선임 건
- 제5호 의안 기타

2021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제8차 정기총회 회의록

제 목 : 제7차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서면(화상)총회 결과 공고

시행일 : 2020년 3월 11일(목) 오후3시

장 소 : 한국컴퓨터산업협동조합 회의실(화상총회)

【2021년 제8차 정기총회 회의록】

의장 : 현재 의결권 조합 61곳 중에 참석 5곳, 의결안 제출 31곳의 협동조합이 참여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아래 표 참조)
이에 개회를 선언합니다.
아래 식순에 의거하여 의사일정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이의가 없으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일동 : 네라고 답하여 동의하다.

서기임명은 의장의 건의대로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사무국장 한미희를 임명해도 되는지를 묻고 모두 동의하여 확정하다

의사록 서명 날인인 의사록 서명 날인인은 한국렌탈사업협동조합 손일균이사장, 협동조합 다락 성민희이사장,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김지연이사 등 3인으로 정하다.

◆식순 보고를 하고 참석자 일동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식순에 전원 동의, 재청, 박수로 통과하다.

제1호 의안 2020년 사업 및 결산 감사보고

송기찬(송기찬 법무사대표)감사가 3월3일에 감사한 내용을 보고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상 참석치 못해 서면으로 대신하다

의장 :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진행을 해도 좋을지 참석자의 동의를 구하다.

참석자 일동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식순에 전원 동의, 재청 박수로 동의하다.

의장 : 원안대로 진행함을 선언하다

제2호 의안 2020년 사업 및 결산 보고 심의의 건

의장 : 자료로 보고하고 질문 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다.

참석자 일동 특별한 질문과 의견 없이 원안 통과에 동의하고 재청하여 박수로 통과하다

의장 : 원안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제3호 의안 2021년 사업 및 예산안 심의

의장 : 자료로 보고하고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다.

김지연회원 : 예산에서 인건비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매번 고민하는 부분은 협의회를 법인으로 전환시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손일균회원 : 협의회를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해 비영리단체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한다

의장 : 협의회는 협동조합이 아니고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모여 있는 단체이므로 이를 다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제고되어야 한다

허훈회원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활성화 사업을 하셔서 감사하다

홍보사업과 관련해서 카탈로그로 발행되는 홍보물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으므로 차후라도 이를 탁상용 달력으로 제작해 1년 동안 지속적인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그 외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참석자 모두 원안에 동의하고 재청하여 박수로 통과하다

의장 : 원안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제4호 의안 임원 선임에 관한 건

의장 : 정관 제12조 1항 임원의 선출 사유에 따라 1명의 이사 선임을 상정하다

선임하고자 하는 임원 - 1명

순	구 분	조 합 명	성 명
1	이사	인천제과점협동조합	김성두

김지연회원 : 2명의 이사가 해임되었으므로 1명의 이사에서 더 선임될 이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다

손일균회원 : 이사 선임을 이사회에서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다

장인실 회원 : 이사 선임은 정기총회에서 의결해 선임하므로 이사회에 위임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다

의장 : 현재 이사를 하겠다는 분이 더는 안계시므로 다음 이사는 내년 총회에서 선임한다
참석자 일동 더 이상 질문과 의견 없이 원안 통과에 동의하고 재청하여 박수로 통과하다

의장 : 원안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의장 : 정관 제13조 6항 임원의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2명의 이사를 해임을 상정하다

해임하고자 하는 임원 - 2명

순	구 분	조 합 명	성 명
1	이사	한국포토저널협동조합	김노천
2	이사	인천공항주차협동조합	류상희

장인실회원 : 이사의 해임 보다는 사임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다

의장 : 해임은 이사의 결격사유가 있어서 해임되므로 사임으로 표현하지 않는 부분으로 양해를 구하다

참석자 일동 의견 없이 원안 통과에 동의하고 재청하여 박수로 통과하다


제5호 의안 기타 안건

의장 : 기타 안건이 있는지를 묻고 참석자 일동이 없다고 하자 총회를 폐회하여도 될지를묻다.

참석자 일동 네라고 답하면서 동의하고 재청하므로 이에 의장이 총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의사록 서명 날인인

1. 한국렌탈판매협동조합 손일균



2. 협동조합 다락 성민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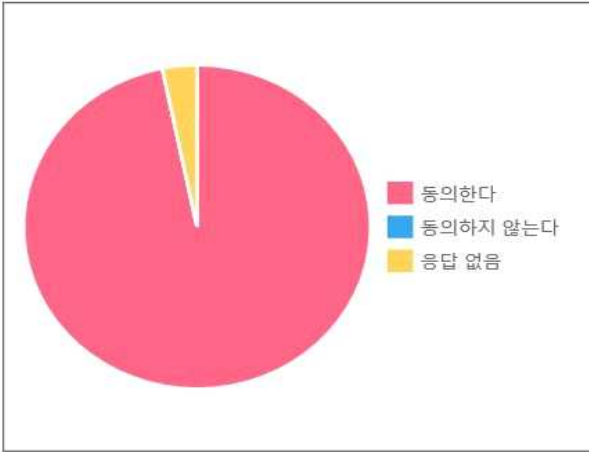
3.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김지연



31명 응답

응답 별 결과보기 >

3-1. [제2호 의안] 2020년 사업 및 결산보고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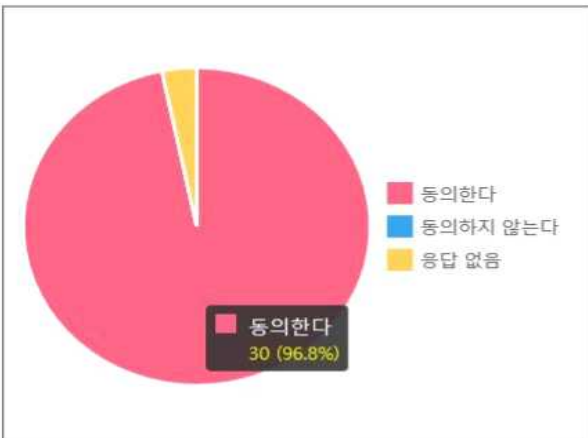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응답	응답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의한다	30 96.8%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는다	0 0%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응답 없음	1 3.2%

3-2. [제3호 의안]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응답	응답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의한다	30 96.8%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는다	0 0%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응답 없음	1 3.2%

3-3. [제4호 의안] 임원 선임 건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응답	응답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의한다	30 96.8%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는다	0 0%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응답 없음	1 3.2%

1.의결안 제출 : 31명

의 결 결 과			
안 건	찬 성	반 대	무응답
[제2호 의안] 2020년 사업 및 결산보고 심의	30	0	1
[제3호 의안] 2021년 사업 및 예산안 심의	30	0	1
[제4호 의안] 임원 선임 건	30	0	1

2.총회 참석 : 9명(화상 참석 포함), 서면결의 31명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제1호 의안 2021년 사업 및 결산 감사 보고

정관 제10조 감사의 업무 감사는 해당 회계연도의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에 따라 감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별첨한 자료 참고

감사보고서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정관에 따라 2021 회계년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1. 감사절차 요약

- ① 감사인 성명 : 송기찬
- ② 감사대상 : 2021년도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와 부속명세서
- ③ 감사일정 및 장소 : 2022년 2월 23일 협의회 사무실
- ④ 감사내역 : 협의회회 수지계산서 및 지출결의서, 계좌별 거래조회내역서, 입금확인증(계좌이체확인서), 통장, 영수증 등 증빙서류 일체
- ⑤ 주요감사절차 개요 : 장부와 증빙서류를 열람, 검토, 대조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여 답을 듣고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를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감사의견

- ① 회기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한 수지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협의회회 회계 상황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 ② 지출내역은 통장 및 증빙서류와 일치합니다. 단일한 은행계좌를 통해 지출되어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적절한 지출이나 과다지출은 없었습니다.
- ③ 수입내역도 통장 및 회비납부와 후원금 관련 서류와 일치합니다. 계획한 회원 확대가 여의치 않아 예산에 비해 회비수입과 후원금 수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지만 코로나19의 확산 문제 등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 ④ 특히 최근 다른 법인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허위 서류에 의한 자금유용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확인한 바, 협의회회 자산은 금융기관에 분명히 예치되어 있음이 통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⑤ 2021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회원사의 어려움이 이어졌고, 인력부족으로 인한 협회활동의 어려움도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회원사의 활동 및 회비납부가 꾸준히 이어졌고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사업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지만,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 ⑥ 이상 종합하여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2021년 사업 및 회계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 비추어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을 보고합니다.

2022. 3. 2.

감사 송기찬 

제2호 의안 2021년 사업 및 결산 보고 심의의 건

정관 제19조 4항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승인에 관한 사항 및 **5항**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2021년 사업 및 결산에 관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별첨한 자료 참고

[사업 내용]

※2021년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I. 사업 개요

기관명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사업명	2021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사업기간	2021.4월 ~ 12월				
사업비	총90,300,000원	보조금	90,300,000원		
		지방예산	<table border="1"> <tr> <td>시비</td> <td>90,300,000원</td> </tr> <tr> <td>군구비</td> <td>-</td> </tr> </table>	시비	90,300,000원
시비	90,300,000원				
군구비	-				
사업목적	<p>◆인천 시민 및 협동조합 관계자들에게 협동조합을 홍보하여 협동조합의 필요성과 가치를 확산시킨다. 또한 협동조합 경영자 및 관계자에게는 협동조합에 필요한 경영과 운영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협동조합 사이의 연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p>				
추진실적	<p>□ 2021년 사업 추진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 CEO 및 실무자 교육 (7월16일~10월26일)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및 주간행사 개최 (6월25일) ◆협동조합 홍보물 제작 (9월~11월, 39개 협동조합 수록하여 2,000부 발행) ◆우수협동조합 성공사례집 제작 (9월~10월, 10개 협동조합 수록) ◆협동조합 홍보영상 제작 (9월~10월, 총10개업체 제작) ◆취약계층 교육 및 협동조합 인지확산 프로그램 운영 (9월~10월)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교육 (11월, 4회)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날 개최 (12월9일 송도 오라카이호텔) ◆찾아가는 학교 협동조합 교육 (5월~12월 총172학급 4,600여명 교육)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초기에 부진한 면모를 보였으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수행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임 ◆협동조합 우수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카탈로그 및 영상을 제작하여 협동조합을 알리는데 힘씀 ◆계속적인 협동조합 교육을 통해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리더들에게 협동조합 경영교육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경영능력을 배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한 협동조합을 발굴하여 성공사례집을 제작해 타조합의 귀감이 되게 함 ◆홍보영상이 부족한 협동조합에게 영상을 제작해 줌으로써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찾아가는 학교 협동조합 교육은 학생들의 개학연기 및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대면수업이 불가능한 부분은 비대면(ZOOM)수업으로 전환해 교육을 진행함
--

II. 계획 대비 사업 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업 계획	추진 실적
협동조합 CEO 및 실무자 교육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물 제작 교육	- 7월20일~10월26일까지 총4회 교육 - 제작 및 실습과 협동조합 조합원의 역량 강화 교육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및 주간행사	◆협동조합 가치확산 및 생태계 조성	- 6월25일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및 시장상표창 - 협동조합과 일자리 연계 토론회 개최
취약계층 협동조합 교육 및 협동조합 인지확산 프로그램	◆협동조합 인지확산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 -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여 인지확산
우수 협동조합 성공 사례집 제작	◆우수 협동조합을 발굴해 제작	- 우수협동조합 11곳 발굴해 성공사례집 발간 - 각 협동조합 및 기관에 배포해 홍보
협동조합 홍보영상 제작	◆홍보영상이 없는 협동조합에게 영상을 제작해 배포함	- 총 10개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영상제작 - 각 협동조합에 맞는 유형으로 제작해 효율성을 높임
협동조합 장터운영 및 판매 홍보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체험 · 판매 · 홍보 등	- 협동조합 14곳, 사회적기업 5곳, 중간지원센터 1곳 등 총 20곳이 모여 장터운영 - 각종 이벤트 및 체험으로 홍보효과 극대화
협동조합 카탈로그 제작	◆홍보책자(카탈로그)로 발간	- 총 39개 협동조합을 수록하여 총2,000부 제작 - 격년으로 발간하여 제품의 질을 높임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총회 및 세무 등 협동조합 실무교육	- 사업계획서 작성 등 교육 - 총회준비 및 등기변경에 대한 교육 - 세무 및 감사보고 교육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날	◆인천 관내 협동조합 이 모여 함께 즐기는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	-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방여수칙을 준수하여 소규모의 인원으로 진행 - 협의회 사업보고 및 우수협동조합의 사례발표 로 진행
찾아가는 학교 협동조합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협동조합 교육	- 중학교 및 고등학교 172학급에게 협동조합 교육 실시(연인원 4,600여명 교육)

Ⅲ. 사업 추진 성과

-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제9회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연말에는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날을 개최하여 지속적인 협동조합 상생을 위해 노력함
 - 우수협동조합을 선발하여 3곳의 협동조합에게 시장표창을 상신해 수여하므로 협동조합의 자긍심을 높임 또한 인천 관내 협동조합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네트워크의 날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 ▶취약계층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하고, 협동조합 인지확산에 대한 노력을 함
 - 학교 밖 등 취약계층에 놓여있는 청소년들과 학부모, 교사 등을 모집하여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함 이밖에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이벤트를 실시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힘씀
- ▶홍보의 다양성을 구축하여 협동조합의 다양한 홍보로 우수협동조합 성공 사례집, 협동조합 홍보영상제작, 협동조합 카탈로그 제작 등 협동조합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제고
 - 협동조합 카탈로그를 제작해 배포하고, 우수 협동조합을 발굴해 사례집 제작으로 협동조합의 홍보를 한층 더 다양하게 함 .
 - 홍보영상 제작이 어렵거나 없는 협동조합에게 개별 영상을 제작해 줌으로 홍보의 다양성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줌
- ▶협동조합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협동조합 경영자 및 관계자들에게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중·고등학생 에게 협동조합을 교육을 실시하여 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킴
 - CEO 교육 및 전문가 양성아카데미 교육으로 세분하여 한층 심화된 교육으로 경영 능력을

강화하고, 중 고등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협동조합 교육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에게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IV. 자체평가

- ◆2020년도에 열리지 못했던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과 토론회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유튜브로 송출해 많은 인원(176명)이 시청할 수 있게 진행해 매우 좋은 반응을 보였음
- ◆사회적거리두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CEO 교육 및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가 대면 교육과 비대면(ZOOM강의)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나 성과는 매우 좋음
- ◆CEO 교육 등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에도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교육을 받는 점은 지속적으로 고민 할 필요가 있음
- ◆올해 8월에 진행하려 계획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던 선진지 탐방은 매우 아쉬웠음
- ◆우수 협동조합의 사례집 발간은 좋은 선례로 남아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길 바라지만 매년 발행보다 격년제로 발행하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아직도 낮으므로 홍보에 대한 방법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함.
- ◆협동조합 장터 행사를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함께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점이 매우 좋았으나 마을기업 등이 참여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음
- ◆협동조합의 개별 홍보영상을 제작해 줌으로써 각 협동조합의 호응과 관심이 높아짐
- ◆학교교육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개학이 연기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 관계로 취소하는 학교가 생겨나 예상학급(180학급)보다 적은 172학급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12월까지 진행하여 4,600여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높이 평가함
- ◆비대면(ZOOM) 강의도 학교의 높은 관심과 호응이 있었으며, 이를 옹진군 등 섬에 있는 학교 등이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작년에 비해 참여한 학급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가 증가할 수 있도록 예산과 강사들의 강의능력 향상을 위한 보강 교육 등이 계속되어야 함.
-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권역별 협의회 간담회를 갖지 못했던 점은 매우 아쉬웠으나, 이를 인천 관내 협동조합이 모두 모인 네트워크의 날로 개최하여 참석한 협동조합들로부터 매우 좋은 효과를 얻었음

V.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 사항

-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도 사업도 제때 수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차선 사업을 구상해 놓을 필요성이 있음
- ◆운영비 부분을 여유롭게 편성하여 모든 사업을 기획, 교육,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늘어나야 함
-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예산의 증액이 꼭 필요한 현실임.
-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행사와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행사를 함께 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연구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요청해야 함.
- ◆기간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적절하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게 인천시의 유연한 정책이 필요함.

VI. 예산 집행 실적

1. 총괄

(단위 : 원)

분	사업비(A)	지출금액(B)	잔액(A-B)
계	90,300,000	90,300,000	0
CEO 및 실무교육 사업	3,000,000	3,000,000	0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및 주간행사	8,000,000	8,000,000	0
취약계층 협동조합 교육 및 협동조합 인지확산 프로그램	6,000,000	6,000,000	0
협동조합 장터 운영	12,000,000	12,000,000	0
우수협동조합 성공 사례집 제작	6,000,000	6,000,000	0
협동조합 홍보영상 제작	18,300,000	18,300,000	0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3,000,000	3,000,000	0
홍보 카탈로그 제작	6,000,000	6,000,000	0
2021년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날	3,000,000	3,000,000	0
찾아가는 학교 협동조합교육 사업	25,000,000	25,000,000	0

■ 예산 집행내역

(단위 원)

사업명	입금일	예산액	집행액	차액	비고
찾아가는 협동조합 학교 교육	5월3일	25,000,000	25,000,000	0	완결
권역 및 업종별 협의회 운영계획	5월3일	3,000,000	3,000,000	0	완결,차액변경 ↓홍보영상제작
협동조합 CEO 및 실무자 교육	6월1일	3,000,000	3,000,000	0	완결
협동조합의 날 및 주간행사	6월1일	8,000,000	8,000,000	0	완결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홍보	6월30일	6,000,000	6,000,000	0	차액변경 ↓홍보영상제작
우수협동조합 성공 사례집 제작	6월30일	6,000,000	6,000,000	0	완결
협동조합 취약계층 교육 및 협동조합 인지확산 프로그램	6월30일	6,000,000	6,000,000	0	완결
협동조합 홍보 영상 제작	8월27일	18,300,000	18,300,000	0	완결
협동조합 장터운영 및 홍보·판매지원	6월30일	12,000,000	12,000,000	0	완결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8월27일	3,000,000	3,000,000	0	완결,차액변경 ↑홍보영상제작
우수협동조합 탐방 및 네트워크	8월27일	0	0	0	변경 ↑홍보영상제작
이자	6월19일	5,368		5,368	
	12월18일	21,465		21,465	
총합계		90,326,833	90,300,000	26,833	차액 추후반납예정

[내부회의 요약 보고]

1. 8차 정기총회 개최

- 일시 : 2021년 3월 11일(목). 오후 4시 서면총회(화상총회)
- 장소 : 서면(화상)총회
- 참석인원 : 회원 61개 협동조합 중 9개 협동조합 참가, 30개 협동조합 서면동의

2. 이사회

일시 및 장소	주요 안건	의결사항
1월7일(목)오후4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회의실	가.2021년 사업결과 보고 나.2021년 총회 일정	가.2021년 사업에 대한 보고 나.총회일자 확정(3월11일 목 오후4시)-서면(온라인)총회
4월8일(목)오후5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세미나실	가.2021년 활성화 사업 논의 나.협의회 공지사항	가.활성화 사업의 10% 자부담에 대한 논의 나.2021년 협동조합 유공 표창 건
5월12일(수)오후5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회의실	가.2021년 활성화 사업 논의 나.회비 인상안	가.협동조합의 날 및 주간행사 및 협동조합 CEO교육 일정 등 논의 나.회비 인상은 추후에 다시 논의
8월23일(화)오후5시 한국컴퓨터산업협동 조합 회의실	가.2021년 활성화사업 논의 나.기타 공지사항	가.사업의 지속성 및 자부담에 관한 건 나.홍보사업 및 교육사업 일정
12월3일(금)오후4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회의실	가.2021년 활성화사업 보고 나.2022년 사업계획 논의 다.기타사항	가.각 활성화 사업에 대한 요약 보고 나.2021년과 대비해 새로운 사업 안건 수립 다.2021년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날 기념식 일정 보고

3. 교육위원회

- 5월20일 ‘찾아가는 학교 협동조합’ 기획회의 및 시연회
- 10월5일 ‘전문가 양성아카데미’ 기획회의

[결산 보고]

수 지 계 산 서 (2021.1.1.~12.31)

(단위 원)

계정과목	당기(2021.1.1~12.31)	전기(2020.1.1~12.31)	비고 (2021년 기준)
수 입 총 계	109,079,068	109,068,653	
1.회 비			
회 비	11,350,000	11,190,000	협의회 회비
특 별 회 비		(제주워크숍)1,000,000	취소되어 반환함
후원금	3,020,000	4,046,200	
합계	14,370,000	16,236,200	
2.경상외수입			
시 사업 보조금	90,300,000	87,155,540	시 활성화 사업비
사업수입	1	7	시사업통장 잔액 이월
이자수입	5,624	6,447	
교 육 수 입 금			
행 사 수 입			
협의회 이용기금			
합계	90,305,625	87,161,994	
전 기 이 월	4,403,443	5,670,459	
지 출 총 계	107,048,670	104,665,210	
1.사업비			
시 활성화사업비	90,564,460	87,235,040	활성화 사업비 지급 등
2.활동비			
정 책 활 동 비	70,000	394,000	활성화사업 정책보조 등
홍 보 활 동 비	247,500	110,000	문자 전송료
조 직 지 원 비	1,300,000	1,200,000	전국협의회비
연 대 활 동 비	420,000	75,200	경조사 및 전국협의회 활동
행 사 비	207,500		기념식 및 장터행사비 등
3.관리비			
인 건 비	12,500,000	12,500,000	사무급여 및 상여금
경 비	253,560	253,560	사무실임대료
회 의 비	221,000	248,320	이사회 및 업무회의비
통 신 비	152,950	212,690	사무실전화비
업 무 추 진 비	969,800	1,127,100	사무실 일반수용비
소 모 품 비	25,000	66,700	사무실비품, 문구류 등
지 급 수 수 료	30,800	1,035,300	이체수수료
교 통 비	86,100	207,300	전국협 아카데미 교통비
예 비 비			
당기잉여금	2,030,398	4,403,443	

제3호 의안 정관 개정의 건

정관 제8조 1항과 2항의 권리제한과 징계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로 권리제한 또는 징계할 수 있다에 관한 사항과 정관 제12조 및 제13조 임원의 선출 및 결격사유의 뒤에 선거운동의 제한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의 추가 등 정관개정을 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권리제한과 징계)

1. 1년 이상 협의회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6개월 이상 협의회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1년 이상 연속하여 회비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7조 3항의 회원은 연회비 및 소정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에 따라 제8조 1항과 중복되는 문항으로 삭제

개정(제14조 및 15조 항목으로 추가)

제14조(선거운동의 제한)

1.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의회 임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①회원(협의회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②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 ③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 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3. 누구든지 협의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①선전 벽보의 부착
 - ②선거 공보의 배부
 - ③소형 인쇄물의 배부
 - ④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 ⑤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1. 협의회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 등록한 자는 회장후보가 될 수 없다.
3.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5.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①후보자의 자격심사
 - ②선거인 명부의 확정
 - ③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 ④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 ⑤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 ⑥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 ⑦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 ⑧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 ⑨당선인의 확정
 - ⑩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7.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8. 위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호 의안 임원 선임 건

정관 제12조 1항 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고자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하고자 하는 임원

*회장-1명, 이사-14명, 감사-1명

순	구 분	조 합 명	성 명
1	회장 후보	미추홀중식협동조합	선철규
2		사회적협동조합 엠커뮤니티	이명선
1	이사	사회적협동조합 동그라미	권덕진
2		인천제과점협동조합	김성두
3		협동조합 청솔주거복지센터	박분옥
4		협동조합 다락	성민희
5		한국렌탈판매협동조합	손일균
6		나눔경제경영협동조합	송준호
7		인천종합물류협동조합	이상근
8		퍼실리테이션쿵협동조합	이혜연
9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	장인실
10		글로벌플라워협동조합	정미경
11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정세일
12		협동조합 꿈꾸는 문화놀이터 뜻	정윤희
13		한국컴퓨터산업협동조합	조병우
14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이병철
1	감사	송기찬법무사	송기찬

제5호 의안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정관 제19조 4항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승인에 관한 사항 및 **5항**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2022년 사업 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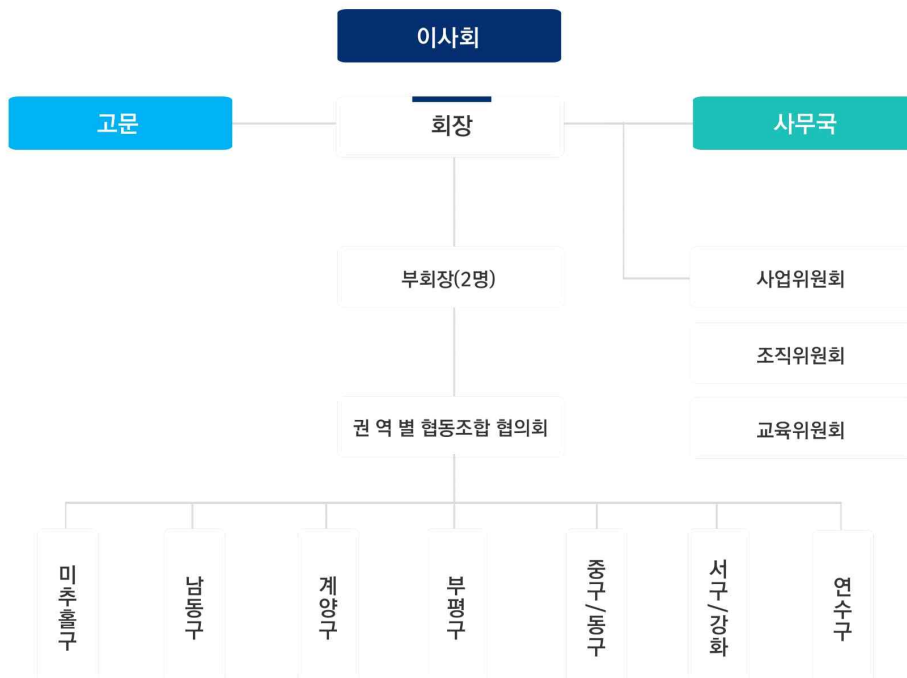
*별첨한 자료 참고

* 별첨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단체명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회장	조병우(한국컴퓨터산업협동조합)
소재지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229번길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1302호		
전화번호	032-725-3324	FAX	032-725-3325
E-mail	coopofcoop@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coop4a.or.kr
단체설립일	2014년2월6일	사업자등록번호	131-82-80793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한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마련 ○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지역별·직능별 협의회 결성 지원. ○ 협동조합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교육 ○ 인천시민에 대한 협동조합 홍보 및 교육 ○ 협동조합과 관련한 정책 제안 ○ 협동조합 관련 법률 및 조례 재·개정 운동 ○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연대 활동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활동 		

조직도



요 약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

2022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육성 계획

- 비 전 : 함께 하는 협동조합으로 시민이 행복한 인천 만들기
- 목 표 : 협동조합 활성화와 협동조합 가치 실현
- 추진방향
 - 협동조합의 가치 확산 및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
 - 협동조합의 자주·자립·자치적 역량 강화
 -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협동조합 설립 확대
- 협동조합 설립 현황 : 632개(510, 사회적협동조합122. 2021년12월 말)
- 2022년 사업규모 : 4분야 / 10사업, 90.3백만원
 - 분야별 세부사업

사업분야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사업시기
총 계 (4분야 / 10사업)		90.3	
소 계 (3사업)		30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가치 확산	협동조합 상담센터 운영(중간지원 기관 연계)	비예산	연중
	협동조합 학교 교육 추진	27	3 ~ 12월
	협동조합 CEO 및 실무자 교육	3	5 ~ 11월
소 계 (3사업)		31	
협동조합 역량 강화 지원	협동조합 주간행사 개최(기념식 및 토론회)	10	6 ~ 7월
	학교 밖 청소년 협동조합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신규]	6	7 ~ 10월
	협동조합 개별 홍보영상물 제작 배포	15	5 ~ 10월
소 계 (1사업)		14	
협동조합 판로개척 지원	협동조합 장터 운영 및 제품 홍보·판매 지원	14	5 ~ 10월
소 계 (3사업)		15.3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인천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날	4	12월 초
	관내 협동조합 탐방 및 간담회[신규]	4	5 ~ 10월
	전국 우수협동조합 탐방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7.3	6 ~ 8월

2022년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

-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및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형성
- 협동조합 활성화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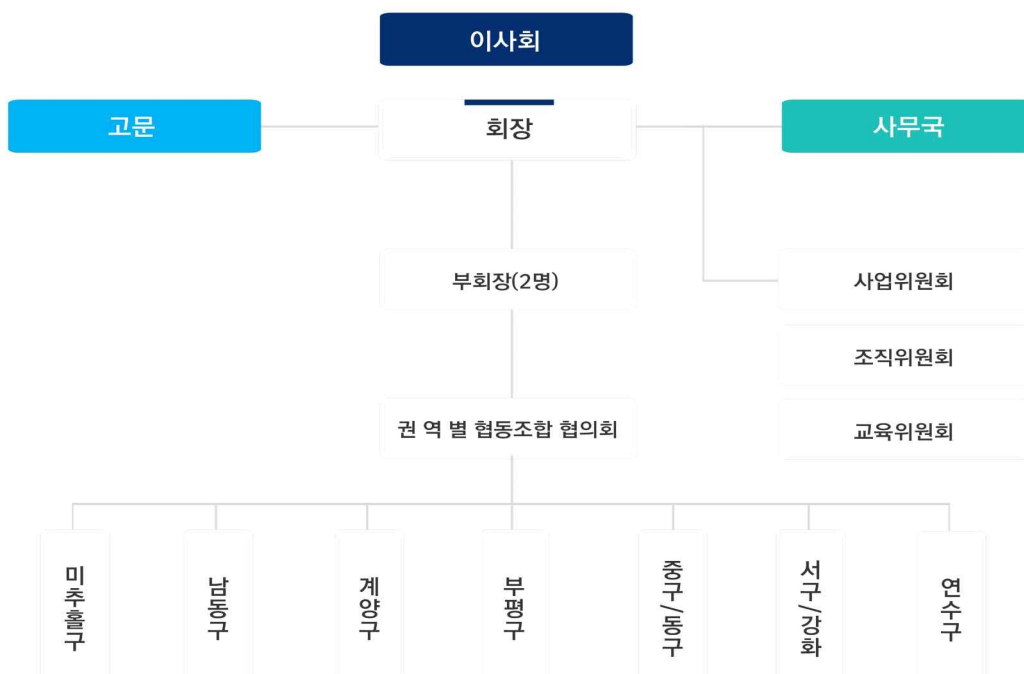
I. 추진방향

- 협동조합의 가치 확산 및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
- 협동조합의 자립·자조·상호이용 역량 강화
-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700개로 확대(21년 말 현재 조합수 620개)
- 협동조합과 타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협업 분위기 조성
-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

II. 추진체계

- 조직도

조직도



○ 인력구성

직 위	성 명	주요경력	담당업무
협의회장	조병우	- ()한국컴퓨터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현)아이피씨네트웍스 대표 - (현)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 인천컴퓨터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 협동조합 역량강화 추진사업 총괄 관리 - 협의회 업무관리 총괄
협의회 부회장	정윤희	- (현)꿈꾸는 문화놀이터 뜻 이사장 -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 운영위원 - 2014전국마을기업박람회 진행 행사기획 전문가	- 협동조합 역량강화 - 협의회 업무관리
	장인실	- (현)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 이사장	
고 문	심형진	- (전)인천협동조합협의회 회장 - (전)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 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 등 다수 협동조합 설립 및 컨설팅	- 컨설팅 및 상담 -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업
조직위원장	정세일	- (현)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 (현)일자리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위원장	- 협동조합 역량 강화 추진 - 조직 기획 업무 지원
사업위원장	손일균	- (현)한국렌탈판매협동조합 이사장 - (현)미추홀구협동조합협의회 회장	- 협동조합 역량 강화 추진 - 사업 기획 업무 지원
교육위원장	성민희	- (현)다락협동조합 이사장 - 2016~현재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강의 - 2014년 '항아리; 항상 아름다운 마을' 결성	- 협동조합 역량강화 추진 - 교육 기획 업무 지원

※ 협의회 소속 회원조합의 개별 역량과 특성을 효율적으로 조직·이용하여
활성화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협동조합 간 협동 체제를 구축함.

III. 사업추진계획

▣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가치확산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동조합 친화적 시민 제고를 위한 체계적 홍보, 교육 강화

○ 협동조합 「상담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상시)
- 운영방법 : 방문 또는 전화상담(* 전화번호 725-3324, 446-9492)
- 운영장소 :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중간지원기관)
- 주요내용 : 협동조합 설립 준비사항, 절차·설립신고·등기 등의 상담, 협동조합 사이의 협업을 위한 연계 등 경영 지원, 조합원 교육·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 사업비 : 비예산(*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 회원협동조합 협력)

○ 협동조합 학교 교육 추진

- 목 적 : 협동조합의 정의 및 가치를 체험 등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협동조합 근간 마련 및 미래 진로탐색에서 협동조합 역할 증진
- 시 기 : 2022. 3 ~ 11월
- 내 용 : 미래세대(중·고등학생)의 협동조합 이해와 전파
- 사업비 : 2,700만원

○ 협동조합 CEO 및 실무자 교육

- 운영횟수 : 4회(5월~8월)
- 교육대상 : 협동조합 임직원 및 실무 담당자
- 주요내용 : 노무·세무·법무·홍보 등 협동조합 경영에 바로 사용 할 수 있는 지식 습득 및 참여자 경험 상호공유
- 사업비 : 300만원

▣ 협동조합 역량 강화 지원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경영, 법무, 노무, 세무 등 전문분야의 상담, 컨설팅, 교육 및 협동조합 제품의 판로 지원

○ 협동조합의 날 및 주간 행사 개최

- 시 기 : 2022. 6. 20.(월) ~ 7. 2.(토)
- * 협동조합의 날 : 2022. 7. 2.(토) / 협동조합 주간 : 2022. 6. 20.(월) ~ 7. 2.(토)
(「협동조합 기본법」 제12조 제1항)
- 장 소 : 인천예술회관 국제회의장 및 인천시청 등
- 내 용 : 기념식 및 부대행사, 토론회 등
 -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기념사, 축사, 우수조합 표창, 부대행사)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등
- 사업비 : 1,000만원

○ 학교 밖 청소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 개최시기 : 2022. 7 ~ 10월(1~2회)
- 참여대상 : 청소년, 대학생
- 내 용 : 협동조합 창업 관련 교육 및 창업아이템을
협동조합으로 창업 사업계획 발표 및 심사, 시상
- 사 업 비 : 600만원

○ 협동조합 개별 홍보영상 제작

- 제작 시기 : 2022년 8월~10월
- 참여대상 : 인천시 관내 우수 협동조합 및 신규 협동조합
- 내 용 : 우수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협동조합의 사례 등을
살펴보고,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사례집 제작
- 사 업 비 : 1,500만원

▣ 협동조합의 판로개척 지원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와 이해 증진, 사회적 경제 가치 확산을 위한 협동조합의 활성화 추진과 협동조합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 협동조합 장터 운영 및 우수협동조합 제품 홍보·판매 지원

- 시 기 : 2022. 4~10월
- 개설장소 : 유동인구가 많은 아파트, 백화점 및 광장 등 판매 및 홍보효과가 큰 장소
- 주요내용 : ❶ 우수 협동조합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장터 운영
 - *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 운영
- ❷ 언택트로 전환 시 체험키트 등으로 운영
- 사 업 비 : 1,400만원

▣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 관내 협동조합 탐방 및 간담회

- 시기 : 5월 ~ 10월 (5회)
- 참여대상 : 신규 협동조합과 기존 협동조합
 - * 권역별로 신청 받아 탐방일정 공고
- 주요내용 : 기존 협동조합과 신규 협동조합의 매치업을 통한 효과 기대
 - 각 탐방 협동조합 간담회 지원
 - 권역 및 업종별 협동조합 활동 홍보
- 사 업 비 : 400만원

○ 인천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날

- 시기 : 12월 초(1회)
- 참여대상 : 인천 관내 협동조합 임직원 및 관계자
- 주요내용 : 한해의 사업결과를 보고하고 관내 협동조합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권역 및 업종별로 협동조합간의 활동을 홍보하며 교류함
- 사업비 : 400만원

○ 우수 협동조합 탐방 및 상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개최시기 : 2022. 6~8월(1회))
- 참여대상 : 25명 내외
- 내용 : 타 지역의 우수협동조합 견학, 소양교육, 조합 간 정보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업비 : 730만원

IV. 기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추진

▣ 인천 협동조합 교육 및 체험장 운영

- 개요 : 교육 및 체험을 위주로 하는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 교육 및 체험 공간을 개설 운영한다.
- 일정 : 2022. 4. ~ 11.
- 내용
 - 공동 교육 및 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개별 홍보 및 운영비용을 줄임
 - 공동 공간의 운영으로 비용을 낮추어 경쟁력을 강화
 - 공동 공간의 도입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의 질을 높임
 - 공동 공간의 운영으로 지속적인 각 협동조합의 개별 상품을 협업화를 통해 품질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상품의 개발 및 단위 협동조합 생산품과 서비스의 본질, 가치, 스토리 등이 담길 수 있도록 규격화 해 고부가가치로 판매 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추진방안
 -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가 위탁관리하는 쉐어마켓 및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의 교육장을 적극적으로 활용
- 사업비 : 비예산

▣ 권역별 협동조합 협의회 주최 협동조합 박람회 및 홍보 장터

- 개요 : 권역별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주민·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확립 및 협동조합 가치, 제품 홍보를 위한 공동 행사(각 지역축제와 연계)
- 일정 : 2022. 5. ~ 10.
- 내용
 - 권역별 협의회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결속 및 협동조합의 가치 및 상품 홍보
 - 인천시 협동조합 상품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권역별 협동조합의 매장을 이용해 상시 구매 할 수 있는 유통망 설립의 전초 행사
 - 권역별 유통망 설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판매망 구축
- 추진방안
 - 권역별 협의회와 협동조합 자주·자립·자치적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결합해 행사 기획
 - 각 지역축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행사 시 협동조합 부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비 : 비예산

▣ 협동조합 이해를 위한 공무원 및 시민강좌 개최

- 목적 : 협동조합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 사회와 협력 관계 구축
- 시기 : 2022. 4~12월
- 내용
 -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접합 및 사이버 교육에 협동조합 편성 유도
 - 각 군·구 평생학습교육원에 협동조합 시민강좌 개설을 유도해 협동조합 강사 파견 교육 및 순회 설명회 개최
 - 사업비 : 비예산

[예산 보고]

2022년 사업 예산안

(단위 원)

계정과목	당기(2022.1.1.~12.31)	전기(2021.1.1.~12.31)	비고
수입총계	113,177,398	109,079,068	
1.경상수입			
회비 1)	15,840,000	11,350,000	이사회비 18×480,000=8,640,000 일반회비 60×120,000=7,200,000
특별회비(후원금)	5,000,000	3,020,000	
2.경상외수입			
시 활성화사업비	90,300,000	90,300,000	시사업보조금
사업수입		1	사업비통장 이월금
이자수입	7,000	5,624	예금이자
교육수입금			
행사수입 2)			
전기이월	2,030,398		
지출총계	110,950,000	107,048,670	
1.사업비			
시 활성화사업비	90,350,000	90,564,460	시사업비 및 부대비용
2.활동비			
정책활동비	100,000	70,000	활성화 정책 사업보조
홍보활동비	250,000	247,500	문자전송료
조직지원비	1,500,000	1,300,000	전국협의회비, 기타회비
연대활동비	500,000	420,000	경조사 등 연대활동
행사비	300,000	207,500	총회자료집 등
3.관리비			
인건비	14,000,000	12,500,000	사무급여, 상여금
사무실관리비	300,000	253,560	사무실임대료
회의비	300,000	221,000	이사회 및 기타회의
통신비	200,000	152,950	사무실전화비,
업무추진비	1,200,000	969,800	사무실식대 및 수용비
소모품비	100,000	25,000	사무실비품 및 문구류
지급수수료	50,000	30,800	공인인증서 및 이체수수료
교통비	300,000	86,100	전국협회참가 및 업무수행
예비비	1,500,000		
당기잉여금	2,227,398	2,030,398	

1) 회원 20명 증가를 예상.

2) 각종 행사에 참가비 등이 발생할 경우의 수입

제6호 의안 기타 안건

폐 회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정관

2014.02.06. 제정
2015.03.19. 개정
2016.03.08. 개정
2018.03.14.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 표기는 The Incheon Cooperative's Conference 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인천지역의 협동조합 간 협동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실천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협의회는 주된 사무소는 인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단체의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및 연대 사업
2. 회원단체의 성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경영·홍보·판매 등의 지원 사업
3. 인천 협동조합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 개발사업
4.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과의 연대 및 사업 관련업무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회원은 본 협의회 설립목적과 운영규정에 동의하는 다음의 협동조합으로 한다.

1. 정회원 : 인천에서 협동조합기본법 및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2. 준회원 : 기타 협동조합 관련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협동조합
3. 특별회원 :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기업 및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기업의 설립, 교육 훈련, 경영을 지원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제6조 (가입과 탈퇴)

본 협의회 회원가입과 탈퇴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원가입은 제5조를 충족시킨 자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초협의회가 구성되어진 지역은 기초협회의 가입과 동시에 본 협의회에 가입되어진 것으로 인정한다.
3. 본 협의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단, 회원가입 거절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회원의 탈퇴는 해당 단체가 제출한 소정의 회원탈퇴서가 협의회에 접수되는 날을 기준으로 탈퇴 처리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본 협의회 운영과 활동전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을 가지며,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 회원은 연회비 및 소정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협의회가 결정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연회비, 부담금의 금액, 납부방법, 절차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 (권리제한과 징계)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서는 총회의 의결로 권리제한 또는 징계할 수 있다.

- ① 1년 이상 협의회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협의회 명예를 손상한 자
- ③ 정관·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협의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로 권리제한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① 1년 이상 연속하여 회비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회원을 제명 또는 징계하는 경우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10일전에 그 회원에 한하여 권리제한 또는 징계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인
- 3. 이사 30인 이내(기초협회의 회장 포함)
- 4. 이사 정수의 1/5 이내에서 사외 이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 (감사)

본 협의회는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감사는 해당 회계연도의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협의회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등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
- ② 제 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
- ③ 제 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④ 기타 협의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일

제11조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에 한해 1회 연임할 수 있다.

1.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하며, 새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결원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로 임명한다.
3. 각 기초협의회의 회장은 당연직이사로 임명한다.
4. 단, 회장은 회원인 협동조합의 이사장만 할 수 있으며 위임할 수 없다.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의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5조 (임원의 퇴임 및 해임)

1. 임원 및 감사는 제11조에 따라 연임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 ① 제8조의 회원제명과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된 회원은 당연 퇴임한다.
2. 임원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의결로 해임 할 수 있다.
 - ① 법령,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 ②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③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16조 (자문위원)

법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각계의 전문가로서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제18조 (소집)

총회의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② 이사회의 요청으로 회장이 승인하는 경우
 - ③ 회원 3분의 1의 동의로 회원단체가 소집 요청하는 경우
 - ④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회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를 문서로 명시하여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협의회 해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승인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감사보고서의 승인
9. 그 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의결 정족수)

총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총회는 전체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하고, 동일하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회장은 개회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1조 (구성)

이사회는 본 협의회 최고의 집행기구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사외이사는 협동조합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2. 각 기초협회의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22조 (운영)

1. 이사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2. 단,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때 회장이 소집하거나 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집행한다.

1. 협의회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부회장 및 사외이사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초협회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신입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8.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
9.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기타 이사회의 권한에 포함되는 사항

제24조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본 협의회는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 정책국장 1인, 조직국장 1인을 둔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수의 실무자를 둘 수 있다. 정책국장과 조직국장은 비상근으로 한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별도의 사무국을 둘 수 없는 경우 회원 단체나 기관에 사무국 업무를 포괄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 (기초협의회 설립 및 운영)

본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의거 기초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5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있는 기초단체는 기초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기초협의회는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 협의회 일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기초협회장, 업종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장은 협의회 회장이 겸임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집행
2. 협의회 운영 및 추진사항에 대한 일반사항
3. 그 밖의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1.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하며,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7 장 재 정

제29조 (수입)

본 협의회 수입은 회비와 후원금, 그리고 기타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30조(운영)

1. 협의회 모든 재정은 사단법인의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2. 제4조 4항에 의거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재정의 경우 위탁기관에서 요구하는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제31조 (회계연도)

본 협의회는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2조 (의결 규정)

본 협의회에 속한 모든 정관조직은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단 회원 및 임원의 제명, 협의회 해산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 출석과 2/3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33조 (위임 규정)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위임 규정을 둔다.

1. 모든 회원은 같은 기업이나 단체에 속한 대리인에게 본인이 직접 날인한 서면 위임장을 통해서 회원이 가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단, 회장은 회원인 단체나 기관의 대표만 할 수 있으며 위임할 수 없다.

제34조 (서면 의결)

본 협의회에 속한 모든 정관조직은 해당 조직에 속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사전 동의로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제35조 (의결 제척사유)

임원 및 회원은 사회통념상 당사자의 직접적인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6조 (회의록의 작성)

본 협회회의 모든 정관 조직은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하며, 모든 회의록을 회원 전체에게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

제37조 (준용 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과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